

KREI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플러스



김상효 | 연구위원
skim@krei.re.kr

이기현 | 부연구위원
khlee0912@krei.re.kr

변지현 | 연구원
minnie132@krei.re.kr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와 농업 부문 과제

KEY MESSAGE

-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농식품 부문 관세 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SUMMARY

- 미국이 제기한 농업 이슈는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쟁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다른 분야와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되는 협상 전략 수립이 요구됨.
- 다가올 한미 간 제3차 기술 협상과 이후의 실무 통상협약에서 한국 농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식량안보 최우선, ② 품목별 대응 방안 마련, ③ 농업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됨.

01 트럼프 2기 통상정책 전개 현황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로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자국 내 산업 보호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하게 표방하며, 취임 직후부터 2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관세·비관세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임.¹⁾
-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는 대선 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 개념으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동일하고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임. 이 구상은 특정 국가나 품목을 선별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매겨,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배경으로 함.²⁾³⁾
-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한 개념으로,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도 동일한 수준(거울(mirror) 관세)을 매기겠다는 ‘상호주의적 무역(recognized as a reciprocal tax)’ 원칙을 의미함.⁴⁾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 상호 관세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면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관세 조치 이외에도 위생검역(SPS) 기준, 저율관세할당(TRQ) 등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상대국에 요구하여 미국산 제품의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음. 또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투자 유치 압박과 함께 에너지 수입 확대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통해 구리·목재 등 전략 자원에까지 제재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다층적 통상 압력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1) ‘트럼프 노믹스 2.0’은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여 고성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성격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환경 부담을 일부 묵인할 수 있다는 반환경주의 성격을 취하고 있음. 현대경제연구원(2024),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경제주평, 24-18(통권 976호).

2) 다만, 기존 무역 질서를 급격히 재편하고 무역 분쟁을 촉발할 우려 때문에 공식 정책으로 도입되어 전면 시행된 사례는 아직 없음. 한편, 보편 관세의 부과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Erin Spampinato(2025. 2. 14.), “As Trump escalates trade war, analysts tell shippers to expect the unexpected”, Saving Seafood).

3) 세계은행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10%의 보편 관세를 시행하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0.2%p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국가의 보복 관세가 동반된다면 성장률 감소가 최대 0.3%p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World Bank(2025), Global Economic Prospects).

4) U.S. Embassy in Switzerland and Liechtenstein(<https://ch.usembassy.gov/special-address-u-s-president-donald-j-trump-wef-2018/>), 검색일: 2025. 3. 30.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포하며,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Ⅰ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Global Baseline Tariff)

- 2025년 4월 5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최소 10%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됨. 이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본 관세임.

Ⅱ 국가별 차등 상호 관세(Country-Specific Reciprocal Tariffs)

- 당초 발효 예정일은 2025년 4월 9일이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관세⁵⁾가 적용될 예정이었음.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었다고 주장함.
- 관세 부과에 대한 시장의 즉각적인 반발과 주식·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9일부로 보복 조치를 취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한국 포함 57개국)에 대해 차등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함.
- 이 유예 기간 동안 해당 국가들의 수입품에는 10%의 보편 관세만 적용됨. 2025년 7월 9일 0시 1분(미 동부 시간)에 이 90일 유예가 만료될 예정임.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날짜 전까지 미국과 ‘7월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여 상호 관세 부과를 피하는 것이 목표인 상황임.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두 차례 실무진 협의를 거침.

- 지난 4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회가 개최됨. 이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양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라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2025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한·미 ‘2차 기술협약’이 진행되었음. 이 협회에서 미국 측은 소고기 등 특정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규제 완화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5) 백악관 차트 및 행정명령에 따라 25~26%로 논의되다가 25%로 최종 결정되었음.

02 2차 무역협상에서의 농업 이슈



미국 협상단은 5월 20~22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6개 분야(① 균형 무역, ② 비관세 조치, ③ 경제 안보, ④ 디지털 교역, ⑤ 원산지, ⑥ 상업적 고려 등)에 걸친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함.

- 미국 측은 ‘과도한 비관세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함.
- LMO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로 언급됨.

해당 개선 요구사항은 4월 백악관에 제출된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별무역장벽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임.

- 2025년 초,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대통령 각서(Memorandum)⁶⁾에 따라 외국의 불공정하고 비상호적인 무역 관행을 점검하는 절차를 시작함. 이는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기조를 재확인 하는 조치임.
-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5년 2월 20일 공고를 통해 약 3주간 공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기간 동안 모든 부문 총 768건의 의견서가 제출됨.⁷⁾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가 작성되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3월 31일 제출함.
- 제출된 농업 관련 단체 의견서 중 한국과의 무역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11건임. 미국 내 4개 단체에서 쇠고기 한국 수출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언급했고 세 개 단체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 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함<표 1 참조>.

6) 미국 우선 무역 정책에 대한 대통령 각서(America First Trade Policy Presidential Memorandum)
The WHITE HOUSE(<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검색일: 2025. 6. 12.

상호주의적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대통령 각서(Reciprocal Trade and Tariffs Presidential Memorandum)
The WHITE HOUSE(<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2/reciprocal-trade-and-tariffs/>), 검색일: 2025. 6. 12.

7) 미국 무역대표부 공개접수 목록(Docket ID:USTR-2025-0001)
USTR Comments Portal(<https://comments.ustr.gov/s/docket?docketNumber=USTR-2025-0001>), 검색일: 2025. 6. 12.

〈표 1〉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업 관련 단체 의견서 내용 - 수출 관련 품목

품목명	단체명	요구사항
쇠고기	미국쇠고기생산자협회 (National Cattleman's Beef Association)	30개월령 이하 소고기 제한 해제 요청(중국, 일본, 대만은 이미 해제) - 과학 기반 무역 원칙에 따른 협의 진행 - 캐나다산 도축용 가축의 사료 요건 문제 해결 요청
쇠고기 부속/가금육	타이슨 푸드 (Tyson Food)	- 세미카비자이드(Semicarbazide: SEM)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기준 완화 - 미국산 가공 소고기 및 내장류 수입 제한 해제
쇠고기/닭고기	육류 연구소 (Meat Institute)	- 미국산 가공 소고기 및 일부 부위 수입 제한 해제 30개월 월령 제한 해제 - 한국의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Positive List System: PLS) 운영 방식 재검토 요청 - 세미카비자이드(SEM)에 대한 무관용 정책 철회 요청 - 한미FTA 내 SPS 위원회 활용한 정기 협의 강화 요청
쇠고기	전미육류수출연맹 (U.S. Meat Export Federation)	30개월령 제한 철폐 요구 - 캐나다산 사육우(도축용) 수출 제한 해제 - 락토파민(Ractopamine) MRL 적용 - 저장 상태 라벨링(Storage State Labeling) 제도 완화 또는 개선 요청
대두	전미대두협회 (American Soybean Association) 전미대두수출위원회 (U.S. Soybean Export Council)	- 비유전자변형(non-genetically engineered: non-GE) 대두에 대한 TRQ(관세할당) 공지 시기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PLS) 운영의 유연성 확보 - 유전자변형 작물 승인 절차 간소화 및 중복 검토 제거 - 비유전자변형(non-genetically engineered: non-GE) 대두 인증 절차 간소화
기술	미국생명공학산업협회 (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 한국의 GMO 수입 승인 절차 간소화 및 법 개정 요구 - LMO법 개정 없이는 제도 개선 불가능

미국 측 주장 1: 쇠고기 수입 제한 및 부속 부위 문제

- 미국쇠고기생산자협회, 육류 연구소, 타이슨 푸드, 전미육류수출연맹 등의 단체에서는 한국이 30개월령 이하 소고기 제한과 특정 부위(예: 소의 작은창자, 혀 등) 수입 불허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음. 미국 측은 이미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교역국에서 해당 제한이 완화되었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조치가 무역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함.

I 쇠고기 수입 제한 해제 요청 배경에는 미국 내 소 사육두수 이슈가 있음.

- 2021년 이후 미국 내 소 사육두수와 송아지 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내 수요는 연간 1,270만 톤 이상 유지되어 온 반면, 생산량은 2021년 1,273만 톤에서 2024년 1,229만 톤으로 감소함. 2025년 생산량은 1,181만 톤으로 전망됨<그림 1 참조>.⁸⁾
- 미국 내 생산 감소로 수출이 가능한 물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2024년 한국과 일본에 수입되던 물량도 줄어든 상황임.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내 미국산 수입 쇠고기 점유율이 하락함.
-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이 적용되는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도축 시기를 앞당겨야 하므로, 소와 송아지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임. 이 제한을 해제한다면 미국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육 기간을 늘려 사육두수를 일정 규모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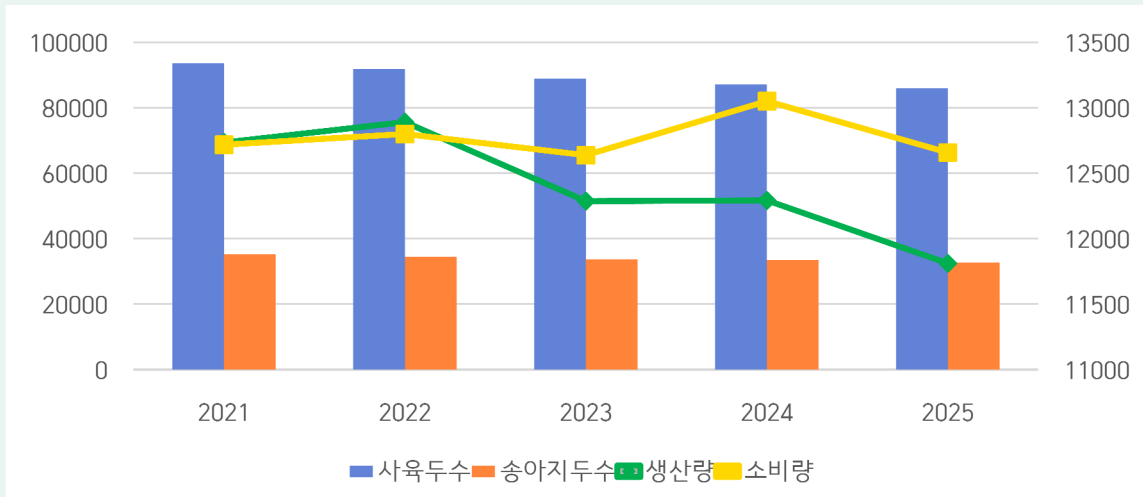
I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의 무역 분쟁 및 중국 시장 내 낮은 점유율 등의 이슈가 있는 상황임.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고 점유율이 높은 한국·일본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는 미국 수출업자들의 전략적 선택임.

- 중국은 세계에서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임. 2024년 기준 중국은 374만 톤을 수입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본 73만 톤으로 2위, 한국 57만 톤으로 3위를 기록함.
-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복 관세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더해 지난 3월 중국 세관(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GACC)이 대다수 미국 쇠고기 생산시설의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대중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임.
-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는 중국 전체 수입액의 5%를 차지함. 이는 미국 전체 쇠고기 수출액의 16%에 해당함.

8) USDA FAS(2025),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그림 1〉 미국 소, 송아지 사육두수 및 쇠고기 생산량, 소비량

단위: 천 두(왼편), 천 톤(오른편)



자료: USDA FAS(2025),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Ⅰ 전미육류수출연맹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 철폐로 1억 1,0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의 잠재 수익 창출이 가능함.

- 이는 30개월령 제한 조치, 캐나다산 육우 도축 제한 조치, 락토파민(Lactopamine) 제한 조치,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EM) 관련 조치 등의 철폐로 인한 모든 영향을 포함한 수치임.
- 1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분석한 결과는 작년 기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 수입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국 쇠고기 산업의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출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줌.

미국 측 주장 2: 미국산 유전자변형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 필요

- 전미대두협회와 전미대두수출위원회에서는 미국산 유전자변형 대두의 검역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생명공학산업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검역 과정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더 나아가 LMO⁹⁾ 농작물의 수입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9)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국제연합 「생물다양성협약」의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따라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자가 인위적으로 변경된 생물체”를 의미하며, 식용·사료용·환경 방출용 수입 시 별도의 위해성 심사 대상이 됨.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일반적으로 LMO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나, 유전자변형 생물체 전반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임. 한편,

I LMO 수입 위해성 심사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처음으로 공론화

- 미국생명공학산업협회는 우리나라의 LMO 수입 위해성 심사제도 자체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법 개정을 통한 근본 개선을 처음으로 공론화함. 미국생명공학산업협회는 의견서에서 “국제 기준이나 한·미 FTA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LMO 수입 승인에 자체적인 위해성 심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인 예측이 어렵다”라고 함.
- 우리나라는 “현행 LMO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개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LMO 수입 승인 절차는 환경부·해수부·농촌진흥청이 참여하는 환경 위해성 평가와 식약처의 인체 위해성 평가로 이원화되어 있음. 최근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만약 미국 측으로부터 LMO법 개정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힘.¹⁰⁾ 최근에는 승인이 지연되었던 LMO 감자 품목의 환경 위해성 평가가 2025년 3월 농촌진흥청에 의해 최종 완료되었으며, 이는 미국 측의 통상적 요구와는 별개로, 국내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평가됨.

I 미국 내 유전자변형 생물(LMO) 및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관련 규제는 생산물 규제임.

- 미국 농무부 산하 농업마케팅서비스(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관리하에 「국가생명공학식품표시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이 2022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됨. 이에 따라 Bioengineered(BE)라는 라벨이 해당 식품에 부착되어 판매되어야 함.
- 해당 조치는 ‘검출 가능한 유전 물질’ 기준이라는 규제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최종 식품 제품에 변형된 유전 물질(Modified genetic material)이 ‘검출 가능한(Detectable)’ 상태로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함.
- 만약 BE 작물¹¹⁾로 만들어졌지만, 가공 과정에서 변형된 DNA가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다면 (예: 옥수수유, 설탕, 고과당 옥수수 시럽 등 고도로 정제된 식재료) BE 라벨링 의무가 없음.

BE(Bioengineered)는 미국 농무부(USDA)가 2016년 「국가생명공학식품표시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에서 정의한 용어로, 상업화된 유전자변형식품(GM food) 중 표시 대상 품목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규제 용어임.

10) 동아일보(2025. 3. 19.), “美 바이오 업계 “韓 LMO 농산물 심사 까다로워 법개정 필요” 공세”.

11) 미국 농무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BE 작물은 14가지가 있음.

USDA AMS(<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be/bioengineered-foods-list>), 검색일: 2025. 6. 12.

I LMO, GMO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접근법 차이가 수입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임.

- 우리나라의 GMO 관련 정책 방향이 생산,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검출된 모든 GMO에 대한 표시를 목표로 한다면, 최종생산물 검출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식 규제와 충돌되는 지점이 나타날 수 있음.
- 신정부 공약 중 하나였던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는 이러한 규제 접근의 차이로 인해 통상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특히 수입 농산물에도 적용될 경우 통상 마찰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안전성 확보라는 정책 목적이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면밀하고 논리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함.

품목명	세부 품종	품목명	세부 품종
알팔파	-	파인애플	분홍색 과육 품종
사과	ArcticTM 품종: 갈변 방지 유전자 조작이 된 사과 품종	감자	-
카톨라	-	연어	AquAdvantage® 품종: 성장 속도를 높인 유전자변형 연어 브랜드명
옥수수	-	대두	-
면	-	호박	여름작형, 바이러스 저항형 품종/ 외피단백 기반: 코트단백질 유전자를 도입한 항바이러스성 여름호박
가지	BARI Bt Begun 품종: 방글라데시 BARI 연구소 개발, 해충 저항성 Bt 유전자 도입	사탕무	-
파파야	링스팟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사탕수수	Bt 해충 저항성 품종: Bt 유전자 삽입한 해충 저항성 품종

03 시사점 및 대응 과제



2차 기술 협상에서 미국이 제기한 농업 관련 이슈(쇠고기, LMO 규제 철폐)들은 자국 산업계에 대한 메시지이자 통상 협상용 전략 카드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쇠고기 산업은 현재 생산 차질에 따른 공급 불안정과 더불어 대중 수출 제약에 의한 수요 감소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산업 여건 속에서 한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는 불가피하면서도 전략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음. 미국 협상단이 농업 부문에서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통상적 이익 추구를 넘어 자국 산업계에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유전자변형 식품과 관련한 문제 제기 역시, 중국과의 무역 분쟁 장기화로 인해 미국산 대두의 대중국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자국 내 우려에 대응하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한·미 간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은 농업이 아니라 자동차 및 철강에 대한 관세 문제임. 미국 협상단은 한국이 농업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협상단은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다가올 제3차 기술 협상과 이후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 농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① 식량안보 최우선, ② 품목별 대응 방안 마련, ③ 농업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됨.

I ① 식량안보 최우선: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를 중시하는 통상정책 추진

- 기후위기가 체감되는 시대에 식량은 단순한 무역상품이 아니라, 국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이며, 국가 간 협상에서 핵심적인 무기(Food Weaponization)가 되고 있음. 농업인 고령화, 농촌소멸, 농지면적 감소 속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발생하면,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흔들릴 것이고 식량안보는 악화될 수 있음. 반도체·자동차·철강과 같은 기간산업 부문에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식량안보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시대임을 인식해야 할 것임.

- 식량안보를 국가 전략 수준의 핵심 아젠다로 격상하여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자급률 향상, 주요 곡물 비축제도 정비, 해외농업개발 실효성 제고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I ② 품목별 대응 방안 마련: 파급 영향 기반 품목별 전략 대응 필요

- 미국이 요구할 조치들에 대해서 국내 파급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검토하여, 품목별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소고기 월령 제한 이슈 관련, 월령 제한 단계별로 폐지한 일본 사례¹²⁾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비중 또는 소고기 총수입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 한우 시장 수급 상황과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 호주산 소고기가 대체율¹³⁾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비자 후생 변동을 사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LMO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감자의 경우, 만약 수입이 허용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으며¹⁴⁾, 장기적으로도 1) 유전자변형(GM) 농산물 생산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합법화 요구의 계기가 될 가능성, 2) 다른 GM 작물을 수출하기 위한 외국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¹⁵⁾, 3) 국민 식생활 안정성 우려 등의 장기적 이슈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국내에서 추진 중인 유전자변형작물 완전표시제와의 정책적 상충 가능성을 병행하여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12) 일본의 경우 2003년 12월 BSE 발생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음. 이후 2005년부터 월령 20개월령 이하수입 재개, 2013년에는 30개월령 이하 수입 재개, 최종적으로 2019년에는 월령 제한을 완전 폐지한 바 있음. 2013년 30개월령 이하 수입 재개를 통해서 20~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의 일본 수입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2019년 완전 폐지 이후에는 소고기 수입 구조에서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13) 2024년 기준, 수입액은 미국산 소고기 비중이 57.8%, 호주산이 36.5%로 과점적 구조임. 수입량 기준으로는 미국산 수입이 48.1%, 호주산이 44.6%임.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48.1%인데, 수입액으로는 57.8%인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산 소고기의 가격이 호주산 등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호주산으로 대체될 때 소비자 후생이 변화할 수 있음.

14) 2024년 노지 봄감자 가격 기준(33,755원/20kg), 10만 톤의 감자는 약 1,690억 원 수준임. 54만 톤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23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므로(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농업전망 2025), 미국산 LMO 감자가 추가로 수입될 경우 국내 감자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음.

15) 현재까지 국내에서 식용으로 수입된 LMO 농산물은 옥수수, 면실, 대두,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농촌진흥청(https://www.naas.go.kr/10_gmo/Gmo_Info.do?menu_code=1&mcode=41&tg=1), 검색일: 2025. 6. 12.

Ⅰ ③ 농업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필수

- 향후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추가적 개방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 경쟁력을 높여야 함. 농업 부문 예산은 단기적 생계 지원 수준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산업 구조 전환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임. 스마트농업 및 디지털 농업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AI·빅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스마트팜 기술,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도 도모해야 함.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로 인해 우리 농산물 및 식품의 대미·전 세계 수출이 심각한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¹⁶⁾¹⁷⁾, 장기적 관점에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함. 미국·중국·일본에 집중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중동·유럽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수출 기회를 확보해야 함.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K-Food+의 수출 운동장을 넓혀야 할 것임.

16)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중국 제품에 추가로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약 226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 중 대미 수출 감소액만 약 1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까지 더해지면 최대 240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음(강구상 외(2025),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5(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구상 외(2025),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6,838억 달러이며, 농식품 수출액이 130.3억 달러였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미 수출 감소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음.

17)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는 미국 내 물가에도 영향을 끼침.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 관세로 인한 단기적 혼란과 물가 인상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물가인상의 영향을 반증함(만들레(2025. 2. 16.), “미국 자본주의 황혼 고하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감 수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061-820-2382 jkim@krei.re.kr
내 용 문 의 김상호 연구위원 061-820-2218 skim@krei.re.kr

※ 「KREI 이슈+」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이슈+

제37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와 농업 부문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5. 6.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I S S N 2983-3418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